

## 1. 개정이유

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누적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인상하여 적자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10만원에서 12만5천원으로 인상(안 제10조제1항 개정)

나.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사후 환불제도 도입(안 제10조제2항제6호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    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    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    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 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10만원”을 “12만5천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그 밖에 영 제7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: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또는 전부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0조(수수료) ① 법 제17조제3<br>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응<br>시수수료의 금액은 <u>10만원</u> 으로<br>한다.                  | 제10조(수수료) ① -----<br>-----<br>----- <u>12만5천 원</u> 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<br>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<br>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<br>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<br>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 | ②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5.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~ 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. 그 밖에 영 제7조에 따른 공<br>고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<br>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<br>게 된 경우: 납부한 수수료의<br><u>100분의 50 또는 전부</u> |
| ③ · ④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